

## 2. 土地收用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제13,650호 1992. 5. 22

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 “석유의 정제 및 송유에 관한 사업”을 “석유의 정제·저장 및 송유에 관한 사업”으로, “전자 및 조선(조선공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한한다)에 관한 사업”을 “전자 및 조선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제18조의 3 내지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3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자)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1.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제18조의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다음 각호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구·시·읍·면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으로 당해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자라 하더라도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

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전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등록을 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되는 토지외의 토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등조 중 “법인”은 “개인”으로 본다.

#### 제18조의5 (비업무용토지) 법 제4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소유하는 토지중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판정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종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6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 금액)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제18조의7 (지가변동률)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분기별로 조사한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 기업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채권의 발행일은 국가가 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사업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